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94호

2021년 2월 26일

금요일

선 람	기 관 의 장

규 칙

- 규 칙 제 1 0 5 5 호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2
칙 공포문
- 규 칙 제 1 0 5 6 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
공포문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규 칙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2월 26일

남동구 규칙 제1055호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부설주차장 관리 규칙”을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남동구 공공청사 등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남동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이용을 위해 사용하는 주차장”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청사 등에 설치한 부설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을 “부설주차장 및 주차장(이하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청사”를 “청사 부설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3호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남동구청 청사 부설주차장에 인접한 공공시설의 주차장

3. 남동구 평생학습관 부설주차장

제3조제1항 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제3항에 따라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및 제6항 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주차장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부설주차장”을 각각 “주차장”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부설주차장”을 각각 “주차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중 “부설주차장”을 각각 “주차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단서 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단서 및 제4항 중 “부설주차장”을 각각 “주차장”으로 한다.

제10조 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으로 한다.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부설주차장”을 각각 “주차장”으로 한다.

제14조제1호 및 제2호 중 “부설주차장”을 각각 “주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미취학 아동을 보호자 없이 주차된 자동차에 방치 금지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부설주차장”을 각각 “주차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부설주차장”을 각각 “주차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구청사 인근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구청사 부설주차장과 통합하여 관리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여 요금징수 및 운영시간 등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함

□ 주요내용

- 남동구 공공청사 등의 주차장 정의 및 적용범위(제1조, 제2조)
- 구청사 부설주차장과 구청사 인근 공공시설의 주차장을 통합하여 관리(제3조제2항)
- 주차장 범위(부설주차장→부설, 노외, 노상 주차장)확대를 위해 문구 개정(제3조제1항 등)

규 칙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1년 2월 26일

남동구 규칙 제1056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규칙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를 “규칙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2조의2 에”를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에”로,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경형 또는 일반형”을 “일반형”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주차장”을 “주민개방 목적의 주차장”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7. 주차구획 5면 이상 개방하려는 경우로서 조례 별표 8에 따라 개방지원 가능한 시설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 제목 “(보조금의 신청)”을 “(보조사업의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장 개방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보조금의 지급 결정)”을 “(보조금 등의 지급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주차장 설치비 보조신청서”를 “사업 신청서”로, “별표 1”을 “조례 별표 8”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여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 내용에 따라 보조금 등의 지원을 결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보하여야”를 “통보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경우에는”을 “구청장은”으로, “별지 제3호서식(각서)을 제출받고 별지 제2호서식을”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이행각서를 제출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내집 주차장 설치완료 확인서(관리카드)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 중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매년1회”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매년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관부서에서는”을 “주관부서에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로,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관리대장”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주택 유형	☐ 단독(다가구)주택 ☐ 공동(다세대, 연립)주택 ☐ 아파트					
신 청 인	성 명 인 (법 인)			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택개요	위 치					
	세 대 수			준공년도		
주차현황	기존 주차면수	면 (지상: 면, 지하: 면)				
	추가 설치면수	면				
주차장 조성사항	개 방 형 웬스설치	☐ 설치 ☐ 미설치	조 경 수 식 재	☐ 설치 ☐ 미설치	방범시설 설 치	☐ 설치 ☐ 미설치
행위허가 시설면적 (아파트의 경우)	☐ 주민운동시설		전체	m ² 중	m ² 를 주차장으로 변경	
	☐ 조 경 시 설		전체	m ² 중	m ² 를 주차장으로 변경	
	☐ 단지 내 도로		전체	m ² 중	m ² 를 주차장으로 변경	
	☐ 어린이놀이터		전체	m ² 중	m ² 를 주차장으로 변경	
행위허가	행위 허가일				행위허가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	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현황도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내집 주차장 설치완료 확인서(관리카드)

년 월 일

1. 설치자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설치 및 보조금 지원현황

사업 유형	☐ 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그린파킹)	☐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설치 장소	주차 시설	○ 보 조 시 설 : 대 ○ 보조금지원시설 : 대
주차 형태	평행, 직각, 대문철거 경계담장 철거, 건물 일부철거 또는 개조	셔터(대문) 설치여부
공사 기간	. . . ~ . . .	
총설치비용	원	자비부담
	원	보조금지원
	원	

3. 사용실태 점검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점검일시	. . .	점검결과	

※ 매년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 후 기록

작성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이행각서

1. 인적사항

- 성명(법인명) :
○ 생년월일(법인번호) :
○ 주소 :
○ 연락처 :

2. 사업현황

- 주차장 위치 : _____
- 주차설치대수 : _____ 대, 주차장면적 : _____ m²
- 설치(보조금) 지원 금액 : _____

위 본인은 남동구청에서 시행하는 부설주차장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주차공간을 확보(개방사업의 경우 개방)하였기에 향후 5년(개방사업의 경우 2년)동안 주차장 고유 기능을 유지(개방사업의 경우 개방)하고 주차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 등을 하지 않겠으며, 향후 본 사업의 목적에 위배하여 주차공간의 임의변경 또는 폐쇄할 경우에는 지원 보조금과 법정이자를 즉시 반환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건축물 매도 시 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보조금 지원 주차장 이행조건(의무이행기간)을 명시하겠으며 미 이행 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감수하겠습니다.

이
예
도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 동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지원 주차장 관리대장

(교통행정과)

○ 내집 주차장(일반주택 부설주차장 등 그린파킹)

일련 번호	설치자 인적사항			주차장 설치일시		보조금 지원		기타 (설치방법등)
	성 명	주소 (설치장소)	전화번호	착공일	완공일	지원금액	지원일시	

○ 내집 주차장(아파트 부설주차장)

일련 번호	설치자 인적사항			주차장 설치일시		보조금 지원		기타 (설치방법등)
	성 명	주소 (설치장소)	전화번호	착공일	완공일	지원금액	지원일시	

○ 부설주차장(학교, 공공기관 제외) 개방

일련 번호	설치자 인적사항			주차장 설치일시		보조금 지원		기타 (설치방법등)
	성 명	주소 (설치장소)	전화번호	착공일	완공일	지원금액	지원일시	

○ 학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개방

일련 번호	설치자 인적사항			주차장 설치일시		보조금 지원		기타 (설치방법등)
	성 명	주소 (설치장소)	전화번호	착공일	완공일	지원금액	지원일시	

[별지 제6호서식]

주차장 개방 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부설주차장 현 황	계	자주식		
		옥 내	옥 외	
	대	대	대	
주 차 장 개방면수	대			
개방시간	- 평 일 : 시부터 시까지 - 토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일 요 일 : 시부터 시까지 - 공 휴 일 : 시부터 시까지 - 기 타 :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8] 기준개방시간 참고			
개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개월)			
주차장 이용특성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주차장 개방 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1. 건물 및 토지 소유자 동의서 1부. 2. 이행각서 1부.	1. 건물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3. 건축물대장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7호서식]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주 소				
사업 유형	☐ 일반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그린파킹)		☐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공사내용	주차면 설치장소				
	설 치 면 수	· 직각 주차면 : 면 · 평행 주차면 : 면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주차장 주차구획 확보)			
	공 사 기 간	20 . . . ~ 20 . . .			
	공 사 내 용	※ 스토퍼 등 설치 기재			
총공사비용	원	보 조 금 신청금액	원	본인 부담 금 액	원

상기와 같이 주차장을 설치함에 따라 「남동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 그린파킹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거래명세표 또는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통장계좌입금 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아파트 부설주차장 사업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준공도면 사본, 사용검사필증(구청 공동주택과) 사본, 총공사비 내역서, 세금계산서(영수증), 폐기물 운반(처리) 확인서, 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영수증), 공사 지급 영수증 사본, 보조금 입금 계좌통장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입주자 대표회장 신분증 사본, 관리사무소장 신분증 사본,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개방 시설개선비 신청 시 : 주차장 설치지원·개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이행각서, 공사비 지급내역서(통장계좌입금사본), 사업자 등록증, 거래명세표, 견적서, 건물주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공사 사진(전, 중, 후 10매 이상)
------------------	--

210mm×297mm(백상지 80g/㎡)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조례 개정안 및 관련법령 개정에 조항 정비
- 별지 서식 일제 정비 및 신설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따른 정비

□ 주요내용

- 조례·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 및 용어 정비
(제2조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4조, 제5조제1호, 제2호)
- 주차장 개방 지원 사업에 대한 조항 및 별지 서식 신설
(제3조, 별지 제6호, 별지 제7호)
- 조례 개정에 따른 중복 조항 삭제 (제6조, 별표 1)
-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5호서식까지 정비
- 단순 용어정비 (제1조, 제7조제2항)